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5-08호

2025년 1:1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

[수출플러스 현장지원단 운영 및 후속지원]

충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『**2025년 1:1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**』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1일
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
1. 사업 개요

□ (**추진목적**) 지역 중소기업 수출·경영 애로 해소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

□ (**지원기간**) 2025년 4월 ~ 12월 (상시접수, 예산 소진 시까지)

*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마감

□ (**지원대상**) 도내 수출(희망) 중소기업

□ (**지원규모**) 종합 컨설팅 30개사, 해외 마케팅 5개사

구분		세부 지원규모
공통 종합 컨설팅		30개사
해외 마케팅 (선택)	해외 물류비	5개사
	디자인 개발	
	외국어 홍보 영상 제작	

* 컨설팅, 해외마케팅 기업 부담금 없음

** 해외마케팅 지원: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판단

2. 지원내용

□ **(지원내용)** 참여기업에게 맞춤형 1:1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마케팅 지원

① **컨설팅 :** 중기청,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수출·경영 **분야별*** 중 **1가지**를 **선택**하여 **전문가 1:1 매칭**을 통한 **'맞춤형 컨설팅'** 제공

* 수출입, 인사, 노무, 정보화, 생산관리, 세무·회계, 경영전략, 기술, 금융, 법무 등

② **해외마케팅 지원** **※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지원**

- 해외 물류비, 디자인개발, 홍보 동영상 중 1가지를 선택

[유의사항]
1) 전문가 컨설팅과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 평가를 동시 진행, 85점 이상 기업을 추천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
2) 400만원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
③ **교육·설명회 :** CEO·실무자 대상 무역실무 교육, 해외 마케팅 전략 설명회 등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지원

④ **유관기관 지원사업 정보 제공 :** 수출지원사업 리플렛을 제공하여 중기청·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안내 및 수출상담회, 해외전시회 등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추진

공 통		선 택				공 통
▸ **전문가 컨설팅** - 사전상담 → 전문가 매칭	➜	▸ **물류비** -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	▸ **디자인개발** -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, 홈페이지 등	▸ **홍보 동영상** -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	➜	▸ **정보제공** - 수출유관기관 지원시책 및 교육 등

□ **지원방법**

○ **(컨설팅)** 신청접수(상시) → 사전상담 → 기업 맞춤형 1:1 컨설팅 실시

○ **(해외마케팅)** 전문가 평가 → 기업 선정 → 해외마케팅 지원

□ 분야별 지원 범위

지원항목		지원범위	기업당 지원한도
맞춤형 컨설팅 (공통)	경영전략	▸경영전략에 따른 경영전략체계 및 로드맵 수립 방법 자문 ▸마케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방법 자문 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자문 ▸ESG 교육(ESG 개념 및 중요성, 중소기업에 ESG의 영향, ESG 정보공개 및 보고 방법)	-
	금융	▸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(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충청북도 등의 정책자금,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활용법 등)	
	기술	▸정부 및 지자체 R&D 지원사업 상담 ▸기업의 제조품목 및 상황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과제 제안 및 신청방법 안내 ▸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및 신고 방법 등 안내	
	법무	▸기업법무 일반 상담(회사관계, 독점금지, 하도급 수위탁거래, 사업양도, 주식인수, 대리점, 라이센스, 국제거래 등) ▸지식재산 일반 상담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, 저작권 분쟁,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)	
	생산관리	▸공정개선 및 불량률 개선방법 상담 ▸원가절감 기법(구매, 자재, 공정별) 상담 ▸통계적 품질관리 기법 소개 및 안내 ▸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배치계획 및 직무설계기법 상담	
	수출입	▸수출입물품의 HS 코드 확인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안내 ▸FTA 원산지증명서 활용방법, 관세감면제도 및 관세환급제도 안내 ▸중요 수출실무양식 작성 요령 교육(독점계약서, Offer, Circular 포함) ▸해외시장조사(타겟국가선정, 해외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, 신용조사 등) 방법 교육	
	인사 /노무	▸노동법률 상담/자문(근로계약, 임금, 취업규칙, 최저임금, 4대보험, 해고 등) ▸인사관리,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법, 고충처리, 기업복지 컨설팅	
	정보화	▸스마트공장 구축 시스템 방법 교육(MES, PDM, 도면관리 등) ▸스마트공장 정부지원사업 안내	
	특허	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관련, 선행기술조사/특허창출 방법,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, 특허 권리범위 해석 방법, 특허 출원절차·심판절차, 저작권 관련 상담	
	회계 (세무)	▸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, 가업상속 공제제도 ▸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절세 상담 ▸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상담 ▸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담	
해외 마케팅 (선택)	해외 물류비 지원	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 (국내운임, 취급수수료, 도착국 발생비용, 세금성 경비는 제외)	400만원 이내 (기업 부담금 없음)
	디자인 개발	외국어 카탈로그 제작, 외국어 포장디자인, 외국어 홈페이지(반응형), GUI,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, 제품디자인, CI 및 BI 개발 등	
	홍보 동영상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	

* 서비스 지원내용은 바우처 사업 메뉴판을 기준으로 하되, 물류비, 디자인 개발비, 홍보동영상 제작 우선 지원

**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행

□ **수출 컨설팅 선정방법** : 신청서 검토 후 사전상담·전문가 매칭을 통해 컨설팅 실시

□ **해외마케팅 선정방법** : 컨설팅과 함께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참여의지 등 평가하여 85점 이상 기업을 추천 받아 추천 제외기업*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

* 추천 제외 기업 : 휴·폐업 중인 경우,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,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< 기업 현장 수출역량진단 평가지표 및 배점 >

항목	평가 내용	배점
지원 필요성	구체적인 분야(물류비, 디자인개발 등)의 지원 필요성 및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등	40점
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수출 의지	신규 시장 진출 계획, 성장성 및 수출 가능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등	35점
지원 효과성	지원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	25점
가점	-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내수기업, 충북수출클럽 회원사 (각 2점) - 관세 피해기업 (5점)	최대 10점
합계		110점

- 선정된 지원기업은 **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를** 통해 **시행**

□ 지원절차



3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**신청방법**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이메일(huiras@korea.kr) 신청·접수 또는 방문접수

□ 신청서류(이메일 제출)

연번	제출서류 목록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	(붙임 1) 필수 제출
2	회사·제품 소개서(자유양식)	해당 시

□ **문의처** :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(☎043-230-5372)

4. 유의사항

□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**동일·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**

* 예시)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을 통해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받은 경우, 본 사업에서도 동일한 제품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

** 다만, 기존에 받은 지원과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(예: 기존은 패키지 디자인, 본 사업은 SNS용 배너 디자인)에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

□ 동일·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환수 조치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붙임 1 수출플러스 현장지원단 참여 신청서

기업명				**대표성명**	
사업자등록번호				**전화번호**	
소재지(본사)					
매출	**매출(원)**	2023년		2024년	
	수출(달러)	2023년		2024년	
담당자		성명		부서/직위	
		연락처	·회사번호: ·휴대전화:	이메일	
매출형태 (중복표시 가능)		① 제품 판매	② 기술 판매, 로열티	③ 용역, 설치, 엔지니어링 등	④ 콘텐츠 판매
① 제품 판매	**매출품목**	1.		2.	
	수출방식	☐ 직접수출	☐ 간접수출(유통, 상사, 대기업 벤더, OEM 납품 등)		
수출(예정)지역		☐ 중 국, ☐ 일 본, ☐ 동남아, ☐ 서남아, ☐ 미 주, ☐ 중남미, ☐ 유 럽, ☐ 중 동, ☐ 아프리카, ☐ 러시아·CIS			
자문요청 분야		☐ 판로/수출, ☐ 자금, ☐ 법률, ☐ 세무/회계, ☐ 인력/교육, ☐ 기술/인증, ☐ 관세/FTA, ☐ 선배기업의 멘토링, ☐ 기타			
해외마케팅(선택)		☐ 물류비, ☐ 디자인 개발, ☐ 홍보 동영상 ※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판단			
애로 및 요청사항		* 기업의 애로사항, 수출기반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* 작성 공간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			

[개인정보 수집•이용에 대한 동의]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(기업명)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등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제공하신 정보는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.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까지입니다. 또한, 삭제 요청 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.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상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

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.

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.

2025년 월 일

기업명 : 신청자명 : (서명 또는 인)
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

[참고1]

해외마케팅 지원 평가표

□ 해외마케팅 지원 평가표(안)

기업명					
평가일		2025년 월 일			
평가목표		**배 점**			**점수**
총점 110점		**합 계**			
지원 필요성 (40점)	① 수출 목표의 명확성 - 해외진출계획 수립정도(조직, 인력, 시장조사, 타겟국가, 바이어발굴 계획 등 종합 검토)	미흡 10점이하	보통 11~15점	우수 16~20점	
	② 후속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- 시장조사단계(10점), 바이어발굴단계(15점), 계약성사 완료(20점)	미흡 10	보통 15	우수 20	
수출의지 (35점)	③ CEO 등 수출의지(수출교육 이수, 수출상담회 참가, 수출전시회 참여 경험 보유, 무역사절단 참여경험 보유, 수출전문가와 상담 등) - 해당개수 1개이하(3점), 2~3개(4점), 4개이상(5점)	미흡 3	보통 4	우수 5	
	④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(직전년도 기준) - 10% 미만 (5점) - 10% 이상 20% 미만 (10점) *내수기업 보통 - 20% 이상 (15점)	미흡 5	보통 10	우수 15	
	⑤ 수출실적 성장률(전년 대비) - 0% 이하 (5점) - 0% 초과 5% 이하 (10점) *내수기업 보통 - 5% 초과 10% 이하 (15점)	미흡 5	보통 10	우수 15	
지원 효과성 (25점)	⑥ 기대효과 및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- 신제품개발, 지식재산권 보유, 인프라 확대(전문인력, 장비), 지속 성장 경영 등	미흡 10점이하	보통 16~20점	우수 21~25점	
가점항목 (10점)	ㅇ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내수기업, 충북수출클럽 회원사 (각 2점) ㅇ 관세 피해기업 (5점)	최대 10점			

* 관세 피해기업 증빙자료

연번	서식명		내용
1	미국 직접수출 실적 증빙('22~'24년)		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
2	(간적수출기업) 생산제품의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		① 간접수출실적증명원(수출실적확인) ②구매확인서(구매기업표시) ③구매기업의 수출계약서, 수출신고필증
3	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증빙서류	해외법인/지점(생산거점) 증빙서류	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환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/지사설치 신고필증,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/ 재무상황표 중 택1 *①,②,③으로 미국 간접수출에 기여함을 증빙하여야 인정 *①,②은 KTNET의 정식발급본에 한하여 인정
		해외법인/지사- 미국 수출 증빙서류	생산거점 현지 정부 발행 '22~24년 수출실적 증명원(미국 수출액 증빙 필수)